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50
----------	-------

발의연월일 : 2025. 11. 6.

발의자 : 신정훈 · 서삼석 · 양부남
장종태 · 박선원 · 이병진
차지호 · 모경종 · 이해식
부승찬 · 이정문 · 안도결
정진욱 · 문금주 · 조인철
박정현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 ·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용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 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 · 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

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권 · 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 영어자금 · 영립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 략)

② (생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 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2028년 12월 31일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